

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(제6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시험·분석 업무 범위

- 1) 이화학적(理化學的) 분석, 미생물 분석, 식물시험, 잔류시험, 독성시험 등 분야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.
- 2) 시험 분야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 분야별로 적합한 인력,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가목의 시험 분야별로 제2호에 따른 인력·시설·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을 갖추어야 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인력

- 1) 시험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.
- 2) 시험 분야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확보해야 한다.
- 3) 시험책임자는 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하며, 시험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보존해야 한다.

나. 시설

- 1) 시험연구기관은 시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, 검정실 및 보관실 등을 확보해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.
- 2) 시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품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의 취급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.

다. 장비

- 1) 시험연구기관은 작물재배시험이나 농자재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장비는 항상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라. 시험관리규정

- 1) 시험에 필요한 시험물질과 대조물질에 대하여는 오염,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- 2)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 수행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와 시험실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.
- 3) 시험 수행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시험의뢰자에게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와

동일한 보고서를 보관해야 한다.

3. 제2호에 따른 인력·시설·장비 및 시험관리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운영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